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1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박희승 · 서미화
전진숙 · 박홍배 · 김남희
김정호 · 안도걸 · 김선민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,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	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	2035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